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환급 안내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착오 부과된 것이 확인되어 환급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내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환급 안내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6. 1. ~ 2026. 6. 15. (14일간)
3. 공고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부과일자	환급금액
강*훈	1995.08.08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2023.08.08	28,000
손*진	1969.10.01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35번길	2024.09.18	12,000

5. 기타사항

환부 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2-760-6107 담당자: 장성민

2026. 6. 1.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신포 동 장

